【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뇌혈관질환, 피킨슨 또는 퇴행성질환,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중풍 및 진전, 루게릭병, 다발성경화증, 계통성 위축)을 가진 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이용절차

이용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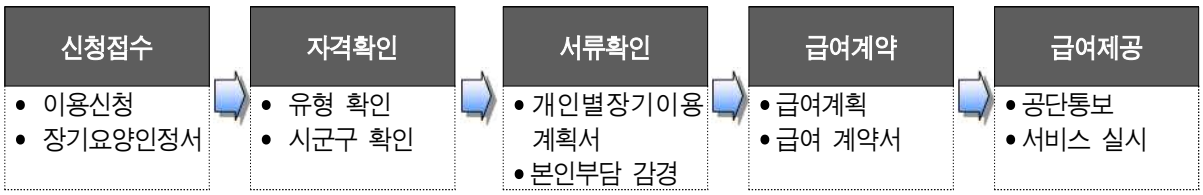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1.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증진, 정서지원(말벗 및 격려) 등

② 일상지원 및 가사지원: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③ 산책도움 및 병원동행 등

2. 방문목욕
기관에서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수급자 가정에 지원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이동욕조를 활용하여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급여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상자(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⑤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또는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2.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3.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의 1회당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원)	본인부담금			
		15%	9%	6%	0%
60분이상(가정내)	48,690원	7,300	4,380	2,9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 부담금	일반(15%)	345,960	312,510	222,850	205,590	176,550
	감경(9%)	207,570	187,500	133,710	123,350	105,930
	감경(6%)	134,380	125,000	89,140	82,230	70,620

■ 이용료에 대한 납부 원칙

1) 기관은 전월 이용료를 익월 초에 계산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문자, 카톡알림, 우편 발송 등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2) 대상자(보호자)는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통장 계좌이체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⑤ 기관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대상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때

④ 대상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대상자(보호자)에게 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장기요양 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이용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기관)와 대상자,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기간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④ 대상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⑤ 대상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⑧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범위 내 서비스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④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⑤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 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 계약의 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보호자)가 반복해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3. 보상하는 손해

⑴ 보험기간 중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⑵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다음 각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①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요양보호사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⑥ 요양보호사의 자기 의사에 의한 무단외출 또는 개인용무 중 발생한 손해

⑦ 그 외 배상책임보험 약정서에 의한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